

가맹단체 가맹·탈퇴 규정

제 정 : 2012. 2. 25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대한장애인리ハビリ협회(이하 “본 협회”라 한다) 정관 제8조에 의하여 본회 가맹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가맹"이라 함은 본 협회 정관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여 본 협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.
2. "가맹단체"라 함은 본 협회 정관에서 가맹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여 본 협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써 가맹을 확정 받은 단체를 말한다.
3. "준가맹 단체"라 함은 본 협회 이사회 의결로써 준가맹을 승인받아 본 협회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제한적으로 적용받는 단체를 말한다.
4. "탈퇴"라 함은 본 협회에 의해 가맹을 승인받은 가맹단체가 본 협회 정관에서 정한 가맹 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.

제 3 조 (가맹구분) ① 가맹단체는 가맹 및 준가맹 단체로 구분한다.

- ② 본 협회는 가맹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제5조의 가맹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정관 제9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하여 준가맹 단체로 승인할 수 있다.
- ③ 본 협회는 필요한 경우 당해 단체의 대표성만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되 본 협회와의 권리·의무관계가 없는 인정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명시된 승인조건을 준수해야 한다.
- ④ 본 협회는 준가맹 단체의 가맹에 대하여 준가맹 승인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여야 재심의 할 수 있다.

제 4 조 (가맹신청서류) 본 협회에 가맹코자 하는 가맹단체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상정할 대의원총회 2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가맹신청서(본회 양식)
2. 단체연혁
3. 임원명단(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첨부)
4. 정관 또는 단체규약
5. 위원회 설치 현황
6. 선수 또는 팀 등록현황
7. 사업계획서
8.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
9. 가맹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(법인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)
10. 시도체육회의 인증서 (추후 제출)

제 5 조 (가맹요건) ① 본 협회 가맹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.

1. 해당 시도를 대표하는 당해 유일의 가맹단체일 것.
2. 시도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가맹단체일 것.
3. 본 협회 정관과 제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가맹단체일 것
4. 가맹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심의절차) ① 가맹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본 협회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.

② 준가맹 경기단체 및 인정단체의 지정은 본회 이사회 의결로써 승인한다.

제 7 조 (제한사항) ① 본 협회 가맹 및 준가맹 단체라 할지라도 본 협회 정관에서 정한 의 무사항 및 지시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본 협회 정관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 한할 수 있으며, 본 협회가 지원하는 모든 것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.

② 제 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준가맹 단체는 본 협회 정관에서 정한 권리사항중 대의원 파견권이 없다.

제 8 조 (탈퇴요건)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가맹단체는 본 협회에서 탈퇴케 한다.

1. 가맹단체가 해산하거나 탈퇴를 요청하였을 경우
2. 제 5 조의 가맹요건을 상실하여 가맹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
3. 가맹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본 협회 정관,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가맹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
4. 임원간의 분쟁, 재정악화, 임원 또는 집행부 부재 및 임원의 권위와 지도력 결여 등의 사 유로 가맹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5. 본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장애인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경우

제 9 조 (탈퇴신청) 가맹단체가 제8조 제1항에 의해 탈퇴코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한다.

1. 탈퇴신청서
2. 탈퇴사유서
3.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(법인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)

부 칙(12. 2. 25.)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